

2025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

I.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5년 6월 26일 ~ 11월 30일까지 (예정) / 상시 접수
 -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20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09:00~24:00, 평일 신청, 주말·공휴일 신청 불가)
- 사업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만 19 ~ 39세의 미혼 청년
- 사업내용 : 전세자금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2. 자격요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③ 미혼 청년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③ 미혼 청년

○ 나이(만 19~39세)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소득산정 기준

- 세전 소득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 21번(총급여) 항목 참조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유 의 사 항 >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동일유형 기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선정 후 본 유형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본(청년)유형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청년부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신청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 대통령이 정한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전월세 전환율 5.0% 적용예시

<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전환율] + 보증금 >

○ 예시 : 월세가 50만원, 보증금이 50,000,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

-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전환율] + 보증금
= [(500,000원×12개월) ÷ 0.05] + 50,000,000 = 170,000,000원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검색하여 계산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외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중양,지자체)임대·매입주택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단, 신청당시 해당주택에 거주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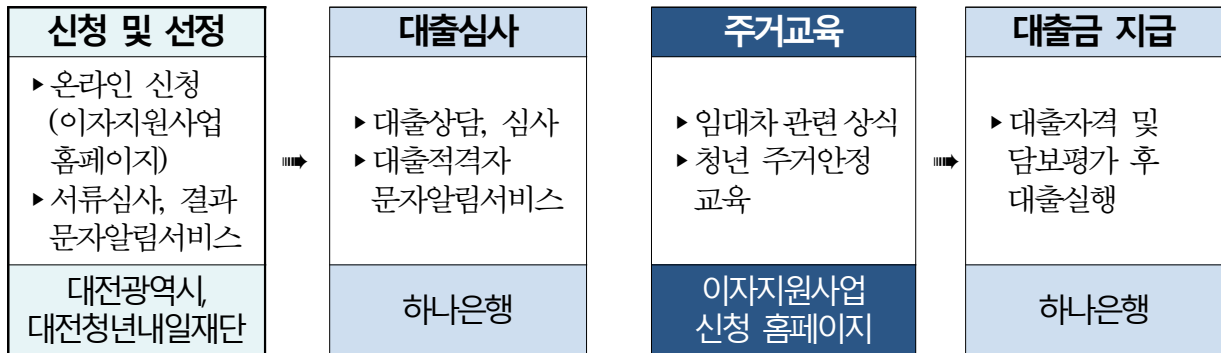
[참고]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사업명	동시지원	순차지원
대전 청년 월세지원	X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지원	X	○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X	○
버팀목/디딤돌 대출	X	○
주거급여	X	○
대전도시공사 임대·매입주택	X	○
LH 임대·매입주택	X	○

※ 해당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2025년 사업공고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로 문의바랍니다.

3. 사업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4.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암호 해제**)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서류의 식별가능여부 등 확인 후 제출 바람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알림 :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통보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djhousing.or.kr>)에서 포기신청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4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온라인(https://www.djhousing.or.kr) 신청서 작성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주민등록등본	<u>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u>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u>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u>조회조건 : 전체</u> 이력 출력본 필요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자격요건별 서류>

제출서류			비고	
추가 서류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실증명원 (2024년 귀속분)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4년 귀속분)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 득증빙자료 추가제출 *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취· 창업자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분)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4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회사 직인 필수,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3~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	
※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6. 연장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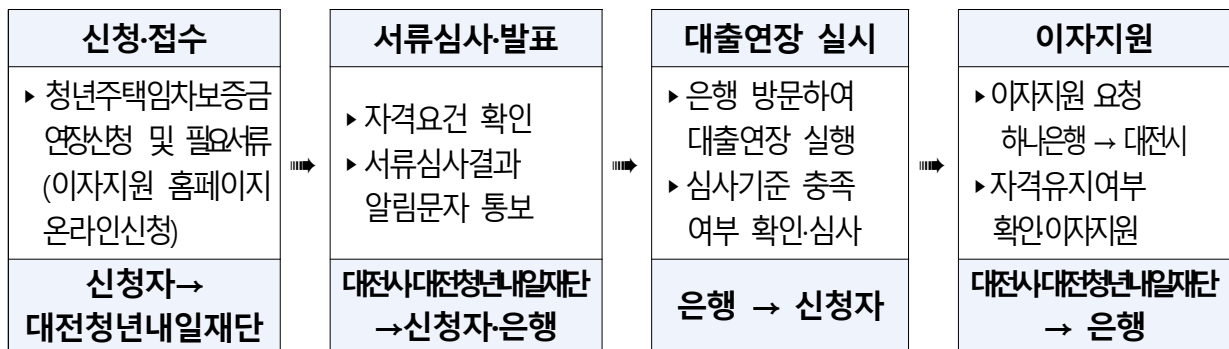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에 연장신청 및 연장신청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 연장신청은 동일유형 내에서만 가능함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연장신청 서류심사 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진행
 - 만기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

-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③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 ④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

- 연장 절차



7. 선정취소 및 지원중단 사유

□ 선정취소 사유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용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차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지원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타 주거지원정책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 변경 제외)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되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431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I. 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5년 6월 26일 ~ 11월 30일까지 (예정) / 상시 접수
 -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20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09:00~24:00, 평일 신청, 주말·공휴일 신청 불가)
- 사업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19 ~ 39세인 청년부부
- 사업내용 : 전세자금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3.7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2. 자격요건

- 신청대상부부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계약 예정 부부

○청년부부 : 우리 시에 정착하려는 청년 부부

-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부부
-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③ 부부 모두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재직중이어야 함
- ④ 부부 모두 만 19~39세이어야 함

○ 나이(만 19~39세)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소득산정 기준

- 세전 소득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 21번(총급여) 항목 참조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제외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확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수급중인 부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이용중인 부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부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이거나 또는 실행하였던 부부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유 의 사 항 >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동일유형 기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선정 후 본 유형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본(청년부부)유형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신청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 대통령령이 정한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 전월세 전환율 5.0% 적용예시

$$< \text{전세금} = [(\text{월세} \times 12\text{개월}) \div \text{전월세전환율}] + \text{보증금} >$$
 - 예시 : 월세가 50만원, 보증금이 50,000,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

$$\text{전세금} = [(\text{월세} \times 12\text{개월}) \div \text{전월세전환율}] + \text{보증금}$$

$$= [(500,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div 0.05] + 50,000,000 = 170,000,000\text{원}$$
-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검색하여 계산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외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중양,지자체)임대·매입주택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 단, 신청당시 해당주택에 거주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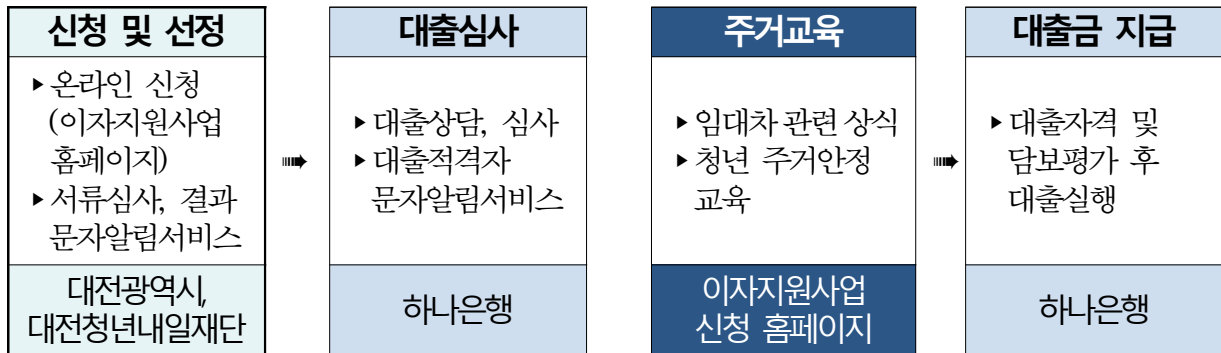
[참고]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사업명	동시지원	순차지원
대전 청년 월세지원	X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지원	X	○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X	○
버팀목/디딤돌 대출	X	○
주거급여	X	○
대전도시공사 임대·매입주택	X	○
LH 임대·매입주택	X	○

※ 해당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2025년 사업공고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로 문의바랍니다.

3. 사업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4.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암호 해제)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서류의 식별가능여부 등 확인 후 제출 바람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알림 :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통보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djhousing.or.kr>)에서 포기신청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4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온라인(https://www.djhousing.or.kr) 신청서 작성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주민등록등본	<u>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u>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u>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u>조회조건 : 전체</u> 이력 출력본 필요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자격요건별 서류>

제출서류			비고
추가 서류	청년 부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분)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4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3~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홈페이지 양식 출력 후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
		자녀 출생확인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사실 확인서	태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6. 연장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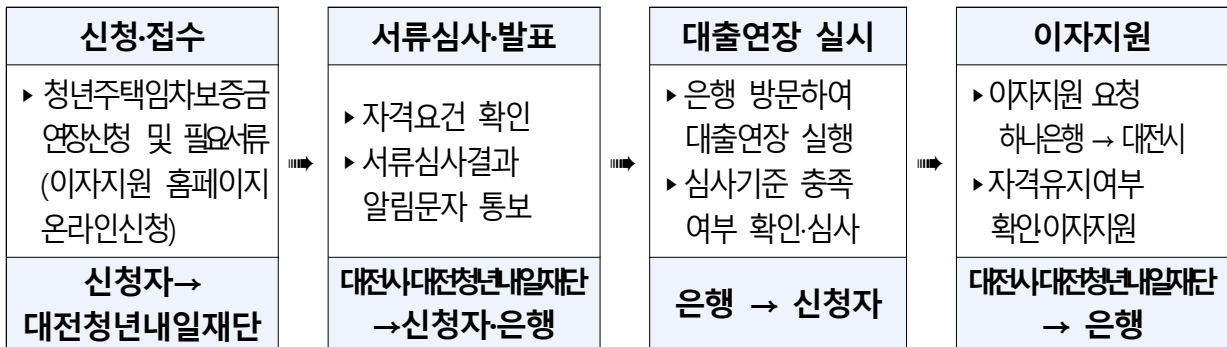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에 연장신청 및 연장신청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 연장신청은 동일유형 내에서만 가능함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연장신청 서류심사 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진행
 - 만기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

- 연장조건 : 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① 부부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③ 부부 모두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 ④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

- 연장 절차



7. 선정취소 및 지원중단 사유

□ 선정취소 사유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용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차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지원중단 사유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여부 확인)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타 주거지원정책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 변경 제외)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일방이 나이(만 39세)초과 ② 본인 및 배우자 합산소득 요건 초과 ③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되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431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